

제413회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2월19일(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62)
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63)
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87)
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93)
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96)
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00)
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08)
8.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09)
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52)
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80)
1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9)
1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78)
13. 기업등의 지속가능경영 지원을 위한 환경·사회·거버넌스 기본법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28)
14.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370)
1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97)
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15)
17.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23)
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46)
1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23)
20.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45)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85)
2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86)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09)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08)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15)
2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17)
27.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22)
28.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900)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907)
30.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947)
3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030)
3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04)

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16)
3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246)
35.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296)
3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6307)
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21)
3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27)
3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29)
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34)
4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35)
4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54)
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55)
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66)
4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82)
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64)
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67)
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95)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25)
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31)
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76)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25)
5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63)
5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71)
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73)
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18)
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46)
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74)
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80)
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867)
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876)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891)
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941)
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057)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064)
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066)
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080)
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56)
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298)
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314)
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320)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322)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329)
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403)
75.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428)

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477)
 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481)
 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482)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483)
 80. 2024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126423)
 81.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및 민영화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배동산 외 52,77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74)

상정된 안건

1.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62) 6
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63) 6
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87) 6
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93) 6
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96) 6
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00) 6
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08) 6
8.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09) 6
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52) 6
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80) 6
1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9) 6
1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78) 6
13. 기업등의 지속가능경영 지원을 위한 환경·사회·거버넌스 기본법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28) 6
14.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370) 6
1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97) 6
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15) 6
17.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23) 6
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46) ... 6
1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23) 6
20.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45) 6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85) 6
2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86) 6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09) ... 6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08) 6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15) 6
2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17) 6
27.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22) 6
28.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900) 6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907) 6
30.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947) 6
3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030) 6
3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04) 7
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16) 7
3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246) 7

35.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296)	7
3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6307)	7
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21)	7
3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27)	7
3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29)	7
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34)	7
4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35)	7
4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54)	7
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55)	7
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66)	7
4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82)	7
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64)	7
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67)	7
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95)	7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25)	7
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31)	7
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76)	7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25)	7
5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63)	7
5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71)	7
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73)	7
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18)	7
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46)	7
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74)	7
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80)	7
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867)	7
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876)	7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891)	7
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941)	7
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057)	7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064)	7
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066)	7
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080)	7
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56)	7
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298)	7
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314)	7
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320)	7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322)	7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329)	7
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403)	7
75.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428)	7
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477)	7
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481)	8

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482) 8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483) 8
 80. 2024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126423) 8
 81.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및 민영화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배동산 외 52,77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74) 8

(15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새로 회부된 법률안과 보증동의안 그리고 청원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덕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덕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주 동구남구갑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영덕입니다.

정말 기라성 같은 선배 위원님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모습 잘 배우고 있습니다.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민생의 어려움 또 국가재정의 어려움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 삶을 살피고 국가의 살림을 챙기는 일에 선배님들 가르침 잘 받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무위원직을 마치고 위원회로 오신 박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남을 국회의원 박진입니다.

진작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외교부장관직을 수행하느라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 여러분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존경하는 김상훈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나라 경제를 살

리기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상훈 감사합니다.

배준영 위원님께서 예결산기금소위원회를 사임하시고 윤영덕 위원님께서 경제재정소위원회에, 박진 위원님께서 예결산기금소위원회에 각각 새로 보임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전보된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전문위원입니다.

김현중 입법조사관입니다.

문유선 입법조사관입니다.

노현정 입법조사관입니다.

김태경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예, 김주영 위원님.

○김주영 위원 본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일명 예타 면제법입니다. 기억 나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교통 문제가 시급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수도 없이 본 위원이 상임위, 소위에서 질의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견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빛철도라든지 다른 더 큰 예타 면제법안은 아무 무리 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지금 김포 지역의 심각한 교통 문제, 사람이 꼭 죽어 자빠져야 정말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할 것인지 저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법안 자체가 지금 아예 상정조차 되지를 앓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상정하고 함께 처리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상훈 경제재정소위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약간 원만하지 못한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 간사님께서 조금 더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지금 아니면 통과시킬 시간이 없어요.

○김주영 위원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이 위원회에서뿐만 아니고 예타면제에 대해서 법안들도 내시고 다 그렇게 하고, 달빛철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에도 불구하고 그냥 처리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상훈 예, 우리 김주영 위원님……

○김주영 위원 아니, 류성걸 간사님께서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안 올려 주는 겁니까?

○위원장 김상훈 오늘은 법률안을 전체위에 신규 상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김주영 위원 그런데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상훈 그것은 여야 간사님들끼리 다시 별도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좀 유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4862)
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4863)
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4887)
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4893)
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4896)
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4900)
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4908)
8.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4909)
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4952)
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4980)

1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5149)

1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5278)

13. 기업등의 지속가능경영 지원을 위한 환경·사회·거버넌스 기본법안(조해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5328)

14. 외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370)

1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5397)

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5415)

17.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5423)

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5446)

1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5523)

20. 외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5545)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5585)

2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5586)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5609)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5708)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5715)

2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5717)

27.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5722)

28.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5900)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5907)

30.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5947)

3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6030)

3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04)
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16)
3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246)
35.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296)
3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6307)
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21)
3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27)
3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29)
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34)
4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35)
4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54)
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55)
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66)
4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82)
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64)
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67)
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95)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25)
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31)
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76)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25)
5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63)
5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71)
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73)
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18)
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46)
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74)
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80)
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867)
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876)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891)
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941)
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057)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064)
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066)
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080)
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56)
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298)
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314)
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320)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322)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329)
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403)
75.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428)
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477)

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481)

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482)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483)

80. 2024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126423)

81.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및 민영화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배동산 외 52,77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74)

(15시14분)

○**위원장 김상훈**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81항까지 79건의 법률안과 1건의 보증동의안 그리고 1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 목록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7항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혜영 의원**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위해서 발의한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국민들은 검찰과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들의 거둬들인 특활비 남용에 대단히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활비 청와대 상납, 돈봉투 만찬 그리고 지난해 시민단체들의 정보공개청구에 의해서 밝혀진 검찰의 황당한 특활비 사용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특활비 사용 관행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년간 150억 원, 하루 5000만 원 뭉치돈을 아무런 증빙 없이 총장 재량으로 톡톡 쓰면서도 누구에게 왜 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는 74억 원을 써 놓고도 단 하나의 증빙자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말에는 남은 예산을 나눠 먹기식으로 지검들이 수억 원씩 가져갑니다. 검사 포상금과 직원 격려금, 심지어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특활비를 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상황이 이런 지경임에도 정부의 대응은 요지부동입니다. 국회가 실태를 파악하려고 해도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는 물론 감사내역과 집행지침조차 알려 주지 않습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법무부의 특활비가 일부 경비로 전환되었을 뿐 1200억 원의 특활비 예산은 2024년에도 온존하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산편성지침에서 특활비를 비공개할 근거를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게 아니라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국회가 나서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제가 발의한 개정안은 특활비 현금 지급 시에 증빙을 의무화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여 특활비 집행지침을 심의하는 특활비심의위원회를 두며 국회 상임위원회의 요구 시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즉 특활비의 외부감사 및 투명성 강화를 제고하는 안입니다.

끊이지 않는 권력기관 특활비 논란은 정쟁이 아닌 제도개선으로 끝내야 합니다. 특활비 문제를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역할에 대하여 국민들은 회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21대 국회가 끝나 가는 이 시점에 그래도 대한민국의 기획재정위원회가 국민들 앞에 ‘그래도 특활비 문제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본 법안의 진지한 심의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류성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7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의원**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동구갑 국회의원 류성걸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확대와 임

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입니다.

고금리 등으로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서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가 다소 위축된 상황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치가 필요한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기업의 2024년 일반연구 그리고 인력개발비의 전년 대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10%p씩 상향하는 한편, 2023년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첫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개정 내용은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것에 대응해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고금리 상황과 아울러서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 증가가 지방 건설사의 자금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지역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신설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에 1주택자인 거주자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두 번째 개정 취지입니다.

본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상목 부총리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6항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80항 2024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부가 제출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24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은 우리 수출입 기업 등 고객들의 외환거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고객과 금융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대고객 외국환중개업을 도입하는 등 외환제도를 일부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부담금을 폐지하고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부과 대상과 목적이 동일한 부담금은 통합 관리하며,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수수료·협회비는 부담금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1건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5조 이내의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보증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정부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기재위 전체회의 이후 새롭게 임명된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언성 재정관리관입니다.

김진명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송주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안·동의안·청원에 대한 검토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별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상호부조의 원리를 통하여 조합원의 복지를 증진하고 협동조합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적 보험 기능을 하는 공제사업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개별 협동조합의 재무적 안전성과 조합원의 금융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기업등의 지속가능경영 지원을 위한 환경·사회·거버넌스 기본법안은 규범화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ESG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규제에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글로벌 기준에 맞는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추진 및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ESG 경영을 법률로 규율함에 따라 기업의 자율성과 경영 유연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등 기존 법률과의 중복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정부가 제출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 등 일반 고객과 금융기관 간의 외환거래 중개인 대고객 외국환중개업을 새로이 도입하고 외국환거래 및 자본거래에 대해 비상조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대고객 외국환중개업이 새로이 도입될 경우 고객의 가격선택권 확대와 거래편의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거래상대방의 대장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의 외국환거래 비상조치 시 현행의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에 더하여 증권과 파생상품까지도 한국은행 등에 보관·예치 또는 매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20항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 20년 만에 발행되는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 및 전자등록 등에 대한 업무를 예탁결제

원이 아닌 한국은행에서 수행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동 개정 사항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2조에서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쪽과 6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0항 2024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공급망법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출입은행에 설치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동 채권 발행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동의안은 한국수출입은행뿐 아니라 한국수출입은행이 지정하는 발행인도 채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급망법 개정 사항이므로 채무자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은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조세 분야 법률안 43건 중 중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접구매에 명의도용 사례가 빈번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명의도용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써 해외직접구매와 관련한 통관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명의대여죄의 적정한 형량에 대한 논의와 법률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일부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페이지는 생략하고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2항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신고대리 세무사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세무사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납세자의 세무조사 준비 지원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 경우 납세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저해할 우려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페이지는 생략하고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2항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예외 요건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취득되는 토지의 취득일 기준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서 2년 이전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용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그 본질은 비사업용 토지라는 점 그리고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까지 제외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 또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74항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0년 이상 노후자동차를 교체할 경우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2024년 상반기 전통시장 사용분 및 전년 대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노후자동차의 조기폐차 유도로 대기환경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둔화되는 소비심리를 진작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개별소비세 감면 시 이외에도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의 세수가 모두 감소하여 세수 감소가 클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 진작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6항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의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국내 투자용 ISA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가입을 허용하려는 것으로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책 효과의 불확실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고액 자산가에 대한 세율 인하로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7항 류성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세대 1주택자가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한편 기업의 일반 R&D 비용 증가분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비수도권의 미분양 문제를 완화하는 한편 기업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촉진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미분양 주택에 대한 반복된 세제 지원은 건설사 및 부동산 PF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현재의 주택시장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동 과세특례의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의 정책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과 법인세 세수 감소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8항 및 제79항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현행 과세체계 방식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급격한 과세 대상자 증가로 인해 해외 증시로의 투자자 이탈, 증시 침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을 철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에 부합하고 소수의 고액 자산가들에 주로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 철회는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정대로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찬반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 들어가기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위원장 김상훈 김포-서울 간 출퇴근 시간대에 전철 등의 여러 가지 교통 여건, 교통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재부·국토부·서울시·김포시 이렇게 여러 관계기관이 모여서 분명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실행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기재위에서도 좀 서포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오늘 신규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부총리님, 수출입은행법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폴란드 방산 수주가 47조 원, 사상 최대 규모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단군 이래 사상 최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박대출 위원 그런데 지금 수출입은행이 그러려면, 남은 수출 잔여계약을 이행하려면 금융 지원이 필요하고 금융 지원을 하려면 수출입은행의 자본 한도가 지금 거의 소진 단계이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한 게 이 법안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박대출 위원 지금 2월을 마지노선이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데 만일에 이게 2월에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자본 한도를 증액해 주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게 예상되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지금 연초인데 현재 수은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에 근접해서 추가 출자 여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 방산뿐만 아니라 저희가 요즘 최근에 수주 산업이 초대형화가 되는 추세이고 그다음에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산업 발굴·육성 필요성 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출입은행의 고유 목적인 수출

금융 이 부분에 대한 역할이 크게 제약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법정자금 확대가 매우 시급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박대출 위원 만일에 이런 계약이 파기될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상상도 못 할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박대출 위원 지금 폴란드 방산 수주 기업만 하더라도 경남에 사업장들이 다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K-9 자주포 1차 협력업체 숫자가 200여 개인데 이 수십만 명의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거든요, 이것 하나만 하더라도. 그리고 방산·우주항공 이것은 경상남도의 젖줄, 경남의 젖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에는 물론이고. 그래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아주 소중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지역에서는 인식하고 있고 이것은 정부 당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박대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출입은행의 자본 한도 증액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딜로이트 2023년 12월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 폴란드 방산 수출의 경제 고용 파급효과가 폴란드와의 방산 계약이 차질 없이 이행되었을 경우에 127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14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이런 분석도, 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률, 수은법 개정안을 개정하는 데 정부도 적극 노력을 해 주시고 여야 위원님들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또 그 관련한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박대출 위원 지금 현재 폴란드는 당사자니까 재촉을 하고 있는데 경쟁국은 또 혹시 이런 기회가 생길까 해서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우리 국회는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국민에게 또 대한민국 경제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심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금투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야 간사

간에 소위에서 논의하는 문제가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 이 문제는 부자감세나, 아니냐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과세 대상이 누구냐가 아니라…… 과세 대상은 지금 상위 1%, 15만 명으로 보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누가 피해를 입느냐 하는 시각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결과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1400만 개인 투자자,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게 없는 방향으로 이 관련 법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1400만 주식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감세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이 폐지 때문에 당장 혜택을 보는 투자자는 일부라 하더라도 그분이 주식 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전체 비중은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본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우려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 기재위 안에서 토의를 하고 또 정부에서 성실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대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 위원 수출입은행 자본금 상향 조정 관련해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법정자본금 한도가 소진돼서 계약이 줄어들거나 또 무산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은 15조 원으로 지난 10년째 변동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규모와 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 수주에 대응하고 또 국내 기업의 첨단전략 산업 육성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을 50조 원까지 대폭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기재부에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 수주하는 데 있어서 국내 제도가 스스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록 개정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당연히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해외 수주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기업들의 수주로 이어지고 그런 것들이 또 우리 국내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진 위원 질문드리는 김에…… 질문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과 관련해서 기재부가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서 공공임대아파트 10년 거주하면 분양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인데 막상 분양 전환이라는 뚜껑을 열어 보니까 건설원가가 3~4배 높게 분양 가격이 책정되고 이게 그대로 입주자들에게 천문학적인 빚으로 남게 돼서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H에서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에 할부이자율을 낮추면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기재부 탓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는데 서민들은 지금 LH가 분양 전환 사업으로 일방적인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인데 기재부 차원에서 이런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앞장서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부총리가 보시기에는 LH의 이러한 행태가 올바른 공기업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제가 특정 공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재무성과 전체가 20점인데, 100점 만점에 20점이거든요. 그중에서 부채 비율이 1점입니다. 그래서 1점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경영 효율성과 함께 자기들도 공공성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을 같이 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영업을 하고 경영을 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경영평가에 미치는

아주 큰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별도의 조치를 하는 것은 그렇고요. LH에서 걱정한 그런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박진 위원 기재부의 입장을 LH에 다시 얘기해서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민간 기업의 출산장려금에 대한 비과세특례를 적용해서 국민들의 부담감도 덜어 주고 또 기업의 법인세도 공제해 줄 필요가 있는데 기재부는 구체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언론에, 기자회견담회에서도 저희 출입기자단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기업들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 자발적으로 지원할 경우에 기업과 근로자의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저희가 지원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한 3월 초까지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언론뿐만 아니라 기재위 위원님들께도 여러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 위원 이번 기회에 기재부가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시고 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올바른 출산장려정책을 수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대체토론 신청하셨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김주영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도 하시겠습니까?

○서영교 위원 예.

○위원장 김상훈 순서에 따라서……

○장혜영 위원 저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알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 위원 작년에 국세수입이 344조 건졌고 전년도 국세수입보다 51조 8000억이 줄어든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양경숙 위원 세목별 세수 핑크는 법인세 -23.3%에 양도소득세 -40.9%, 증부세 -19.5% 등 세수 감소의 대부분이 부자감세의 영향이었습니다.

헌정사상 국세수입이 10조 이상 줄어든 적이 없었고 역사 이래 유례가 없는 최대 감소 수준인 것도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양경숙 위원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재정을 파탄 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는 지표인데요. 나라가 망할 때나 나타나는 지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도 채 안 되었는데 국가재정도 국가경제도 총체적 국가부도 위기 상태입니다.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는 더욱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부자감세의 낙수효과는 전혀 없고 정부의 세수 감소, 긴축·불용 정책으로 돈이 돌지 않아서 지난해 경제성장률만 1%대로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과연 윤석열 정부에게 국가경제 운용이나 재정 운용을 맡길 수 있는지도조차 심히 우려되는 상황까지 도래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민생경제가 파탄 나고 서민들은 빚내서 겨우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가계대출 잔액이 1795조 원으로 사상 최대고요.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1월 은행권에서만 4조 90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끌어다 쓴 다중채무자가 450만 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고 279만 명은 소득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쓰고 있으며 한 달에 1만 명 이상이 빚을 못 갚아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있는 부채지옥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다 물가는 지난 6개월간 3%가 넘는 상승률이 계속되고 있고 가계 가처분 소득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어서 내수경기가 마비되고 작년 민간소비 증가율 2.8%로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면 2013년 이후 최대치에 환율도 불안정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극한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해 소상공인 폐업에 따른 노란우산공제금은 역대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고 빚을 갚지 못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 준 대위변제액도 전년 대비 253.2%나 폭증해서 1조 5521억 원이나 됩니다. 법인 파산도 전년 대비 60.1%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PF 등 부동산 대출은 작년 말에 385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한 달 이상 연체하고 있는 돈이 7조 원에 이르는 등 위험이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총선 후에 부동산시장 붕괴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서민들의 절체절명의 위기와는 대조적으로 극소수 부자, 재벌들의 부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득 상위 20%의 연소득은 평균 1억 1000만 원인데 하위 20%의 연평균 소득 429만 원에 무려 25.6%입니다. 그런데도 윤 정부는 여전히 금투세 폐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등 부자감세에만 혈안이고 봉급생활자들의 세금을 뜯어서 나라를 근근이 운영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부총리, 윤석열 정부는 나라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부자감세로 양극화를 확대하고 나라 공간을 거덜내고 민생경제는 내팽개치고 총선 앞에서는 오로지 권력을 지키고 여론과 민심 조작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열세 지역이나 승부처로 꼽히는 열두 곳에서 민생토론회를 빙자해서 나홀로 한 번 꼴로 직접 나서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경기도에서도 수원에서도 의정부에서도 부산에서도 대전에서도 또 카이스트 이공계 학생들에게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민생토론회는커녕 공약발표회처럼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을 위반한 중대범죄일 수 있습니다.

기재부하고 의논했나요? 이 정책들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공무원들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선거법 위반 소지가 농후합니다. 특히 최상목 부총리는 기재부 후배 공무원들을 선거 중립과 공정 의무를 위반시키고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의……

○위원장 김상훈 양경숙 위원님……

○양경숙 위원 공범처럼 보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법률안 상정과 관련된 대체토론에 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긴급현안이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양경숙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위원님께서 그렇지만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 우려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깊이 새겨 듣고, 최대한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복합 위기 상황에서 경제,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은 앞으로 저희 기재위 또 진행하면서 충분히 더 설명을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 최상목 부총리님, 국민의 생명안전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없습니다.

○김주영 위원 없지요.

교통이 민생이라고 지난번 청문회 때 답변하신 적이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김주영 위원 지금도 그 생각 갖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민생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주영 위원 지난번에 골드라인 탑승계획을 갖겠다, 탑승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 갖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사실은 저희가 계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 직원들하고 한 번 타 봤습니다.

○김주영 위원 언제 타 봤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정확히는 2월 6일입니다.

○김주영 위원 몇 시쯤 타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7시 반쯤 탔습니다.

○김주영 위원 아침 7시 반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김주영 위원 타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어느 역에서 타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거기가 역 이름이 제일, 종점의 두 번째 역인데 제일 붐빈다는 역인데 이름을 제가…… 그러니까 골드라인의 두 번째 역에서 그다음에……

○김주영 위원 구래역이나 타신 것 같은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구래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항까지 타고 갔었습니다.

○김주영 위원 그런데 그때 타 보시니까 어때요? 혼잡하지 않던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제가 과거에 9호선을 타고 여의도에 출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주영 위원** 실제 혼잡도가 285%까지 올라가서 우리 국내에서 가장 높은 혼잡도를 보이는 철도입니다.

수도권에서 인구 50만 넘어서 70만 도시에 국비 철도 없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알지만 검단은 과거에 김포 땅이었고 검단과 같은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검단에 지금 18만이 입주하고 해서 70만이 그 골드라인을 타고 다니는 겁니다, 두 량짜리.

그런데 골드라인 탑승계획을 저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시겠다 그랬는데 그냥 타셨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여러 분들을 번거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댔습니다.

○**김주영 위원** 그것은 말씀이 좀 안 되시는 것 같고,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약속을 안 지키셨네요.

그리고 제가 솔하게 예타 면제를 지금까지 우리 장관님하고 취임하시기 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예타 면제가 되더라도 철도공사는 7~10년 걸리는 장기간 공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혼잡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앞으로 정말 2035년이면 윤석열 정부에서 말했던 콤팩트시티도 이미 입주를 해서 끝나고 인구들이 김포만 하더라도 75만 정도 되는 도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타 면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우리 경제재정소위에서 예타 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또 철도나 신공항 관련해서 여기는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예타 면제가 통과가 됐습니다.

김포나 검단 주민들도 똑같이 세금을 내는 국민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타 면제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 여기에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것 보면 지역구의 절박한 문제들을 다 말씀을 하세요. 저는 생명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칠 수가 없다. 그래서 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경제재정소위를 이미 통과한 그 법안이 우리 상임위에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목련 피면 김포가 서울 편입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목련이 피려면 아마 한 달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국무위원으로서 어떻게, 목련 필 때쯤 김포가 서울에 편입될 것 같습니까?

한번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타 면제와 서울 편입.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취지는 이해합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릴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소위에서 통과된 것이 상임위 전체회의에 올라가야 되냐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기존의 의사와 관련된 부분이라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김주영 위원** 아니, 정부 소관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타 면제와 관련된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동일하게 국회에, 저희 기재부의 여러 가지 그것은 신중히 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법안 관계 없이 저희가 다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주영 위원** 아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들은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차별을 하고 지역 간에 이런 갈등들이 생기게 하는지 그리고 생명안전에 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을 안 갖는지가 저는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훈**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김주영 위원** 그래서 목련 피면 서울 편입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주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사실이 아닌 걸로 봐도 되겠네요.

○**위원장 김상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영 위원** 같은 국무위원으로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국무위원들이 당연히 이런 문제를 논의를 할 것 아닙니까. 국무위원 회의에서 그런 논의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 김상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수 위원** 장관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러신데요. 제가 좀 수출입은행법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작년 6월에 간사에 취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출입은행법이, 자본금 증대가 그렇게 급하다는 얘기를 최근까지 별로 들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도 언론에서 하도 나와 가지고 제가 설명해 달라고 한 지가 이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급한 것 같으면 기재부 관료들이 와서 급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거 앞두고 지금 굉장히 마지막에 벼랑 끝 전술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두 번째, 수출입은행 관련해서 지금까지 보면 거의 15조 중에 10조 가까이, 66% 가까이 현물 출자입니다. LH 주식 갖다 넣어 놓고, 그다음에 산업은행에 출자한 주식을 산업은행이 또 출자하게 만들고, 순환출자…… 민간은행이 신디케이트(syndicate)해 갖고는 안 됩니까, 이자가 좀 올라가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지금 40%는 시행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장관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동일인여신한도가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이게 법 사항이 아니고 자본금의 40%는 시행령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행령 좀 높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행령, 자본금의 100%로 올려서 하세요, 급하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데 왜 국회에 와서 자꾸 급하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장관님, 제 말 들습니까, 지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지금 동일인여신한도 말씀하신 것 40%, 50%……

○**유동수 위원** 동일한도가 지금 시행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급하면 시행령으로 100%까지 하세요, 그냥.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게 50%가 한도……

○**유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로 만들어서 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것은 100%로 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아

시지 않겠습니까.

○**유동수 위원** 급하면 그렇게 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일단 위원님께……

○**유동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말씀드리면 얼마로 증자하는 게 합리적인지 그 이유가 없어요. 정부측 안을 누가 설명도 안 해요.

그다음에 이게 2차 규모가 30조라는데 이번에 20조 정부보증 요구하는데 이것 30조 늘려도 6조 밖에 더 증자 못 해 줘니다, 지급보증 못 해 줘요. 전체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가로 6조 하면 6조, 6조, 거의 15조 되는데 30조로 증자해도 수은 자본금의 절반을 한 기업에 보증을, 폴란드에만 보증을 서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는 안 하십니까? 그런 리스크는 정부에서 걸러 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관님, 금투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하고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하고 있다는 말이 말이 됩니까, 지금 금투세 폐지를 하자고 그러면서?

역대 정부에서 금투세 관련해서 낸 책, 10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갖다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유동수 위원** 장관님, 적어도 기재부에서 30년 정도 가까이 근무하셨는데 금투세법에 대해서 근본적 취지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게.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저는 금투세 시행 시기를 내년에 예정된 걸 좀 더 유예하자, 한국의 금융시장이 지금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워니 금투세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자본시장이 성숙될 때까지 우리가 좀 더 유예하자는 안에는 유연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금융시장의 선진적 발전을 위해서 금투세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걸 위해서 20년간 노력해왔고요, 역대 정부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 정부 할 것 없이 20년간 노력해 온 법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의 질의 순서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오늘 상정된 법안 중에 81항 청원 관련한 내용입니다.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및 민영화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청원이 올라온 것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봤습니다.

○서영교 위원 노동자들 그리고 또 국민들 수만 명이 청원해서 청원 입법하는 사례인 거거든요. 국회에서 법안이 잘 통과되지 않으니까 청원을 한 겁니다. 국회는 제도를 바꿔서 입법 청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지침 등을 기재부에서 내리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서영교 위원 운영지침 등을 내리는데 공공기관 노동자들,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자율성이 침해된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운영지침을 만들 때 거기 함께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그 운영지침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 참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ILO에서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ILO에서 권고하는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지침, 공공기관 임금과 관련해 교섭하는 이런 과정에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그 위원회를 만들자 이런 내용이 있기도 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기재부장관께서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그리고 분석하시고 논의해서 저희들에게 좋은 방안을 가져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저와 김주영 의원 등께서 이것은 기존에 발의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만 명의 입법 청원이 올라온 겁니다. 이것을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제가 현장에 가면 한국노총 그리고 민주노총 등 그리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만나면 이 의견을 아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의힘당에도 총선을 전후해서 충분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많이 반영하겠다고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좋은 방안을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여하튼……

○서영교 위원 그리고 대통령께서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그동안 안 하던 일을 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일곱 번, 서울에서 세 번 민생토론회라며. ‘선심성 홍보 쇼다’, 언론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민생도 없고 토론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발표하는데요.

대통령이 총선 앞두고 이렇게 공약을 발표하면 되는 거지요?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해도 되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게 정책을…… 제가 이해하는 걸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올해 상반기에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상반기에 민생이 어려운 부분들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가, 정부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같이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걸 평상시에 그동안 그렇게 어렵다고 할 때 동안 안 하더니 총선을 바로 앞두고…… 총선을 앞두고, 60일 전에는요 하던 것도 하지 않아야 돼요. 대통령이 이렇게 국힘당에서 원하는 내용들을 공약처럼 발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통령이 공약을 만들면 안 돼요. 아시지요? 정부 관계자는 공약을 만들면 안 돼요. 아시지요? 그리고 국힘당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건 공약이 아니고요.

○서영교 위원 그래서 제가 묻잖아요. 공약을 발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되기 때문에 묻은 거예요. 정책을 발표했다고 답변을 해야지요. 그런데 제가 이게 마치 공약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었는데 답변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연두에 보통은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게 올해는 그걸 주제별로……

○서영교 위원 제가 마저 질문하고 나서 답변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서영교 위원 대통령이 카이스트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R&D 예산 대폭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R&D 예산 그동안 다 깎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폭 늘리겠다고 얘기했

어요. 이공계 석사를 향해서는 ‘월 80만 원씩 주겠다’, 이공계 박사를 향해서는 ‘월 11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기재부하고 상의한 내용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답변을 한꺼번에 같이 해 달라고 하셔서……

○서영교 위원 이 말만 하세요. 기재부하고 상의했어요, 안 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당연히 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상의했어요?

그러면 기재부도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기부의 발언들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게 아닙니다, 위원님.

○서영교 위원 선거법 113조 2항……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R&D에 대해서 말을 하라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서영교 위원 그러면 이것 다시 마저 하세요.

기재부랑 상의했다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서영교 위원 월 80만 원, 월 110만 원 주겠다고 하는 걸 기재부랑 상의했고, 기재부는 그러면 선거법 113조는 검토했습니까? 선거법 113조 기부 등에 관한 법률 2항 누구나 이런 기부 등에 관한 약속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검토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검토하세요. 검토했는지 알아보시고요. 이것은 기재부랑……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의해서 발표했다 이런 말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서영교 위원 그러면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기재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은 감사원이 감사해야 되겠지요? 기재부는 스스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이 시점에, 이 시점이 아니라 선거가 끝나고 나서 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훈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서영교 위원 그런데 이 시점에 굳이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고 해도 되는 것을, 그렇지요? 이 시점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가 되지 않게 대통령에게 그런 문제가 없게 기재부가 의견을 내야지요. 뒤에서 그런 검토들을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최근에 대통령께서 하고 계신 민생토론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저희 정부가 연초에 부처별로 업무 보고하는 것을 올해는 과제별로, 주제별로 나눠서 하는 업무보고를 대신하는 것이고요. 과거에도 지방에서 업무보고를 받기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과거에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청문회나 지난번 현안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상반기가 몰가도 어렵고 민생이 충분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의 정책들을 상반기에 집중해서 펼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의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R&D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R&D를 여러 가지로 R&D다운 R&D로 개혁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출 조정이 있었지만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R&D하고 민간 R&D 간에 구분이 돼서 국가 R&D로서 제대로 된 R&D 체계를 갖추고 나면 앞으로 R&D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정치 일정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올해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민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정부와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이것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딱 1분만 더 주시지요.

○위원장 김상훈 다른 위원님 순서도 있고 하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제가 답변한 것에 관해서 정리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서면으로 하셔도 되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우선 뭘 하실 때 선거법 검토하셔야 돼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매년 하는 부처별 업무보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매년 하는 부처별 업무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특히 선거를 앞둔 이 시기에, 예를 들면 선거를 앞둔 이 시기에는 국회의원들은 얼굴 넣은 현수막도 못 걸어요. 그런데 실수로 걸면 국회의원직 폐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선거 시기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60일 전에는 하던 일도 하지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훈 서영교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서영교 위원 그런데 이것 검토하고 가야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검토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을 위협한 상황에 몰아넣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는 정부 관계자가 검토해야지요. ‘민감한 선거 시기예요’라고 하는데 하필 민감한 선거 시기에 더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위협해요. 아시겠어요?

○위원장 김상훈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래서 이게……

○위원장 김상훈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선거법 위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줄, 저희가 지적하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혜영 위원님과 배준영 위원님의 질의를 남겨 놓고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이 두 분 질의를 끝으로 대체토론을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다음, 존경하는 장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양경숙 위원님이……

○양경숙 위원 보충질문 좀……

○위원장 김상훈 아까 하셨잖아요.

○양경숙 위원 다 마치고 보충질문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장혜영 위원님.

○장혜영 위원 부총리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재부의 금투세 폐지 그리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무엇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금투세 폐지

에 대해서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임시투자소득, 임투세와 관련된 건 지금 그 내용들이 저희가 올해 투자가 상반기에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통과돼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혜영 위원 그렇군요. 제가 알고 있는 기존의 기재부 입장하고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네요.

장관님, 저희가 작년에 세법이 언제 본회의를 통과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12월…… 11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장혜영 위원 21일에 본회의를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 방금 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해서는 시급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금투세 폐지 또한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라고 기재부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장혜영 위원 그렇게 시급하면 작년 세법 개정안에는 왜 안 올리셨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작년 세법 개정안에 안 넣은 것은 아까 임시투자세액공제, 저희가 작년에는, 임투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행중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혜영 위원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세법 통과를 저희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래서 최대한 그 부분들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기다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혜영 위원 저는 그건 별로 신빙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요.

12월 21일 날에 저희가 세법이 통과됐고 1월 4일 날엔가 3일 날에 정부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며 금융투자소득세며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완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걸 행정부가 국회에 근본적인 존중이 없는 너무나 명확한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시급한 사안이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했다면 충분히 작년 세법 개정안에서 저희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넘긴 세법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정부에서, 심지어 국회를 통해서 세법을 개정

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마치 정부가 추진하면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언론에 발표부터 해 놓고 이렇게 2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의원 발의이기는 합니다만, 올리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이견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해서요. 지금 국내 상장 수익의 5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들 중에서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지금 15만 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혜영 위원 그렇지요? 대한민국 1%입니다. 기재부 추산으로는 2.5%라고 추산하기도 하고요. 금융투자협회에서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께서 받으신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2년까지 3년 동안에 2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1% 주식 부자가 내는 세금이요,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위원님, 투자자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계좌가, 개인소득세를 얘기할 때는 부자고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 투자……

○장혜영 위원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제가 여쭙보는 거예요. 이 질문이 이렇게 굉장히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을 붙잡고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내는 세금인데 이것 부자 세금입니까, 서민 세금입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부자 세금이라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부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요, 사실 그 기준도 원래는 2000만 원이었지만 국민들의 반발을 고려해서 5000만 원까지 올렸던 것이예요. 그리고 그 도입의 시점도 많이 유예했습니다.

그런데 급기야는 우리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여야가 그리고 정부가 함께 추진하자고 했던 것이 바로 이 금융투자소득세인데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재부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 사람의 청년으로서 너무너무 눈앞이 캄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도 여쭙봤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5000만 원 이상 근로소득자들이 내는 세율 얼

마인지 아십니까? 5000만 원 이상 근로소득자들이 내는 세율 세율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15%입니다.

○장혜영 위원 24%예요. 24%입니다.

기재부장관님, 제1차관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한민국의 경제를 좌우하시는 분들이 500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자들이 내는 세율조차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서 지금 대한민국 주식부자 1%가 내는 세금을 없애자고 하는 게 조세형평에 맞는 일입니까, 기재부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율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요.

임투세와 금투세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임투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기업들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 말까지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사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을 내거나 하는 것들은 좀 조심스러웠다고 지금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새해가 바뀌었지만 저희가 작년에 투자 경제성과를 평가해 보니까 올해도 그런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린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투세와 관련된 것은 아까 1%이고, 그러니까 부자감세라고 하시는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자본시장 안에서의 투자자들 간에, 그러니까 고액투자자들 이분들이 1%지만 이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실제 자본시장의 개인투자자의 비중, 금액 비중은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영향을 받거나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을 때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선순환을 위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기재위 진행을 하면서 좀 더 충실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혜영 위원 이렇게 때문에 총선용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피하실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대한민국이

돌아갑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장관님, 행정이라는 게 말입니다. 주민들에게 주민을 가로막는 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주민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당연히 길을 제공해야지요.

○배준영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배준영 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꺼내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국민의힘당을 대표하시는 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제가 또 당에서 그 소임을 맡고 있는 특위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역구 의원님께서 그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각별하시고 누구보다 더 많으실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 지역 주민을 생각하고 또 경기도민을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께서 개회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헌법이 1987년도에 바뀐 다음에 37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자료를 보니까 독일의 헌법은 통일 이후에 서른 번 넘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헌법도 그렇게 많이 바꾸는 것은 독일 국민들이 더 원활하게 잘살 수 있게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 국회도 반성합니다.

헌법이 37년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안 바뀌었다는 것은 정말 반성을 해야 될 일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서울하고 경기도, 경기도하고 서울의 큰 경계가 대규모로 바뀐 게 1963년에 바뀌고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60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대규모로. 그러니까 그게 과연 경기도에 살고 있는 도민들의 삶 그리고 서울특별시에 살고 있는 분들의 삶을 충분히 반영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고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주민투표를 하건 의회의 의견을 묻든지 간에 바꿀 필

요가 있으면 바뀌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모든 정치인의 소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야를 떠나 가지고 마땅히 입장을 밝히고 그 입장이 밝혀졌다면 적극적으로 풀어 나가야 될 그런 취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주민 애기와 국민 애기를 했는데 제가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진짜 궁금해할 것을 한두 가지 여쭙볼 텐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아홉 차례 연이어서 금리를 동결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을 자극한다 이런 우려가 있지요. 그리고 특히 고물가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데, 고물가 잡아야 되는데 금리가 이렇단 말입니다. 설이 지났는데도 사과값, 배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냉동과일이 들어오고 그리고 농림식품부에서 166억 원을 들여서 보조를 하고 이렇게 있고, 값싼 외국산 닭고기를 쓰는데도 치킨가격이 오르고, 박카스F의 편의점 가격이 오른다 이런 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경제팀이 잘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월등하게 잘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인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체감하는 물가에 있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물가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여러 가지로 국민들께 정책 당국자로서 일단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과나 배 같은 경우, 사과 같은 건 제가 사과 농가를 가 보니까 사과 농사를 40년 지은 분이 탄저병 때문에 평생 처음 오는 흉작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후나 어떤 병을 닦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물가는 사과값 같은 경우에는 50%, 100%씩 오르는데 정부가 나름대로 할인 지원도 하고 많은 노력들을 해서 소비자가격으로 치면 한 10% 정도 수준의 선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측건대,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

고요. 저희가 6% 수준까지 갔다가 지금 3% 수준으로 내려와서 상반기는 3% 위아래를 가다가 하반기에 가면 2% 수준으로 가는 것으로 저희 전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민들의 체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공급 단계, 그러니까 수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생산을 한다든지 유통하는, 소비하는 각 단계별로 가격이 전가가 되지 않고 결국은 국민들께서 조금은 체감물가를 느낄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저희가 지원도 하고 단계별로 가격 안정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독려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서 하반기부터는 조금 더 물가 부분의 걱정은 상반기보다는 좀 덜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제가 좀……

○위원장 김상훈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님으로부터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양경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최대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요구를 좀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양경숙 위원 아니, 발언하게 해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서면으로 질의해 주세요, 서면으로. 아직까지 본질의도 안 하신 분도 계시니까 협조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6항까지 이상 36건의 안건은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의사일정 제79항까지 이상 43건의 안건은 조세소위원회에, 의사일정 제80항의 안건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의사일정 제81항의 안건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윤영석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소관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 요구 좀 하

겠습니다. 저는 발언 안 했으니까 30초만……

○위원장 김상훈 예,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님으로부터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진선미 위원 30초만 주시면……

○위원장 김상훈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안 될까요?

○진선미 위원 저는 발언 안 했는데 빠르게 3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예, 그러시지요.

○진선미 위원 장관님, 우리가 지난번에 국감 때 정부 일시차입이 세수 부족분을 주로…… 한국은행에 일시차입을 너무 많이 해서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그것에 대한 개선책을 1월 달에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일시차입금 평균잔액이 재정증권 평균잔액을 상회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더 효력이 발생을 하려면 월별로 분기별로 누적된 발행 규모가 비교되고 검토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요청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0년 정도 이렇게 모아서 누적된 평균잔액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 제도 개선하면서 같이 논의한 협의 내용의 참고자료나 또 관련된 그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저희가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최대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유동수 위원 저도 자료 요구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손을 들)

○위원장 김상훈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김주영 위원님의 자료 요구,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김주영 위원 폐회하시기 전에요.

류성걸 간사님, 정말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다른 부분들과 형평성을 보더라도 꼭 다음 상임위에서, 우리 기재위 회의에 법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도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상훈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여야 간사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석 위원(24인)

강 준 현	고 용 진	김 상 훈	김 영 선
김 주 영	김 태 년	류 성 결	박 광 온
박 대 출	박 진	배 준 영	서 영 교
송 언 석	양 경 숙	양 기 대	유 동 수
윤 영 덕	윤 영 석	장 혜 영	정 태 호
조 해 진	진 선 미	한 병 도	홍 영 표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송 주 아
전 문 위 원	이 정 은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부 총 리 겸 장 관	최 상 목
제 1 차 관	김 병 환
제 2 차 관	김 윤 상
차 관 보	홍 두 선
국 제 경 제 관 리 관	최 지 영
재 정 관 리 관	김 언 성
기 획 조 정 실 장	김 진 명
세 제 실 장	정 정 훈
국 고 국 장	임 형 철
국 제 금 융 국 장	신 중 범
대 외 경 제 국 장	민 경 설
소득법인세정책관	조 만 희
재정성과심의관	김 명 중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부 단 장	최 재 영

【보고사항】

○의안 회부

‘손실과 피해’ 기금 출연 촉구 결의안

(2024. 1. 8. 김정호 · 강민정 · 강성희 · 강은미 ·
고영인 · 기동민 · 김경만 · 김상희 · 김성주 ·
김성환 · 김영배 · 김영주 · 김용민 · 김윤덕 ·
김원이 · 김종민 · 김희재 · 노웅래 · 박상혁 ·
박영순 · 박재호 · 박정 · 박주민 · 박홍근 ·

배진교 · 백혜련 · 서삼석 · 소병철 · 소병훈 ·
송갑석 · 신영대 · 신정훈 · 신현영 · 심상정 ·
안호영 · 양기대 · 양이원영 · 어기구 · 우원식 ·
위성곤 · 윤영찬 · 윤재갑 · 윤후덕 · 이동주 ·
이소영 · 이수진 · 이수진(비) · 이용빈 · 이용선 ·
이원택 · 이은주 · 이탄희 · 이학영 · 이형석 ·
임종성 · 장혜영 · 전해숙 · 정성호 · 정일영 ·
정춘숙 · 정태호 · 정필모 · 조오섭 · 주철현 ·
한정애 · 허숙정 · 허영 · 허종식 · 홍정민 ·
황운하 · 황희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4. 1. 9. 이주환 · 박성중 · 김희곤 · 김학용 ·
백종현 · 김용관 · 전봉민 · 박대수 · 지성호 ·
이현승 · 유경준 의원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4. 1. 9. 주호영 · 김희곤 · 김형동 · 장동혁 ·
이현승 · 김용관 · 권영세 · 김도읍 · 윤상현 ·
이용 의원 발의)

이상 3건 1월 10일 회부됨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 발의)

(2024. 1. 16. 김상훈 · 조수진 · 김희곤 · 정희용 ·
이종성 · 엄태영 · 김도읍 · 김형동 · 박대수 ·
권영세 의원 발의)

1월 17일 회부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

(2024. 1. 17. 지성호 · 이용 · 이주환 · 김희곤 ·
김석기 · 이종성 · 김도읍 · 박정하 · 엄태영 ·
金炳旭 · 임이자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

(2024. 1. 17. 유정주 · 이상현 · 임종성 · 문정복 ·
박정 · 민병덕 · 윤재갑 · 이용빈 · 김의겸 ·
최혜영 의원 발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 17. 정부 제출)

이상 3건 1월 18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 발의)

(2024. 1. 18. 김학용 · 이주환 · 정운천 · 유경준 ·
엄태영 · 서병수 · 이현승 · 송석준 · 안철수 ·
박대수 · 권영세 의원 발의)

1월 19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 발의)

(2024. 1. 19. 강준현 · 김교홍 · 정일영 · 정태호 · 윤미향 · 장경태 · 전재수 · 문정복 · 조승래 · 홍성국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2024. 1. 19. 강준현 · 김교홍 · 김성주 · 정일영 · 정태호 · 전재수 · 문정복 · 홍성국 · 조승래 · 송재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22일 회부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24. 1. 22. 이헌승 · 진봉민 · 성일중 · 이주환 · 박성민 · 한무경 · 홍문표 · 강대식 · 유경준 · 노용호 · 정동만 · 우신구 · 윤상현 의원 발의)

1월 23일 회부됨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4. 1. 23. 김도읍 · 유경준 · 조수진 · 권성동 · 권영세 · 전주혜 · 김형동 · 황보승희 · 윤한홍 · 장동혁 의원 발의)

1월 24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 발의)

(2024. 1. 25. 박대출 · 이명수 · 윤영석 · 김예지 · 이용호 · 윤한홍 · 류성걸 · 지성호 · 권명호 · 김형동 · 金炳旭 · 서범수 의원 발의)

1월 26일 회부됨

2024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24. 1. 29. 정부 제출)

1월 30일 회부됨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4. 1. 30. 김도읍 · 유경준 · 권명호 · 황보승희 · 권성동 · 박형수 · 전주혜 · 윤한홍 · 조수진 · 김형동 의원 발의)

1월 31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 발의)

(2024. 2. 1. 박대출 · 윤한홍 · 윤창현 · 전주혜 · 지성호 · 한무경 · 송석준 · 최연숙 · 윤상현 · 홍석준 · 이용 · 김예지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

발의)

(2024. 2. 2. 류성걸 · 구자근 · 김성원 · 지성호 · 박대수 · 임이자 · 김용판 · 이용 · 박덕흠 · 서병수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 발의)

(2024. 2. 2. 박대출 · 김용판 · 지성호 · 송석준 · 김예지 · 이명수 · 윤창현 · 김태호 · 金炳旭 · 김영선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24. 2. 2. 박대출 · 김용판 · 지성호 · 송석준 · 김예지 · 이명수 · 윤창현 · 김태호 · 김영선 · 주호영 · 金炳旭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2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 발의)

(2024. 2. 5. 강준현 · 오영환 · 변재일 · 김병기 · 유동수 · 조승래 · 김영진 · 홍성국 · 이원택 · 김정호 · 진성준 의원 발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 발의)

(2024. 2. 5. 박진 · 구자근 · 지성호 · 김미애 · 윤상현 · 유경준 · 양금희 · 태영호 · 이인선 · 임이자 · 김형동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6일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 분	공포번호	행 정 입 법 명	개정 형태	소관부처
대통령령	제34134호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
	제34135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
	제34154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
	제34210호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
	입 법 예 고	국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
	입 법 예 고	국제장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
	입 법 예 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

구 분	공 포 번 호	행 정 입 법 명	개 정 형태	소 관 부 처
대통령령	입 법 예 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
	입 법 예 고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
	입 법 예 고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
	입 법 예 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
	입 법 예 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
	입 법 예 고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
	입 법 예 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
	입 법 예 고	농·축산·임· 어업용 기자재 및 식유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
	입 법 예 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
	입 법 예 고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
	입 법 예 고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
	입 법 예 고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
	입 법 예 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
	입 법 예 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
	입 법 예 고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

구 분	공 포 번 호	행 정 입 법 명	개 정 형태	소 관 부 처
대통령령	입 법 예 고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
	입 법 예 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
	입 법 예 고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
	입 법 예 고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
	제1033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
부령	제1036호	경제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
	제1037호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